







루이비통 버킷백, 여성용 가방의 상품형태 모방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 서
















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1. 비교대상 상품의 공통점






⑧	조임끈이 관통되는 구멍의 위치가 가방의 가로 길이를 3등분 하였을 때 1/3 지점과 2/3 지점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⑨	원고 제품의 크기는 26cm×26cm×17.5cm(길이×높이×너비), 피고 제품의 크기는 25cm×26cm×16cm(길이×높이×너비)로, 바닥면은 직사각형에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1:0.6이고, 전면부는 길이와 높이가 정방형을 띤다.		

공통점	내용	원고 제품	피고 제품
①	(가) 가방 본체 정면과 후면 상단에 조임끈이 관통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각각 2개씩 총 4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해당 구멍은 반사도		

	가 높은 금속재질로 마무리되어 있다. (내) 정면과 후면 상단 외에 측면에 각각 하나씩 내부에 고리 터널을 구성하여 조임끈을 지나게 하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임끈이 보이지 않는다.		
②	조임끈은 가방 본체를 둘러싸면서 위 구멍들을 통과하여 정면에서 만나며, 조임끈이 통과하는 별개의 사각형 가죽편을 당겨 조임으로써 가방 본체 입구가 위에서 볼 때 네잎클로버() 형상으로 오픈된다.		
③	가방 입구를 조이기 위한 위 사각형의 가죽편은 조임끈과 같은 색상으로, 세로 방향의 바느질이 되어 있고 빨대 2개를 붙인 것처럼 조임끈이 평행하게 관통하도록 되어 있다.		
④	가방 본체 측면 상단 중앙에는 어깨끈이 연결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가 있고, 해당 금속고리는 별도의 가죽편이 감싸고 가방 본체의 위쪽 가장자리에 최대한 밀착하여 바느질되어 결합하고 있다.		
⑤	D자형 고리를 가방 본체와 결합하고 있는 가죽편은 아래 방향으로 길쭉하게 내려와 있고 D자형 고리 통과 부분만 역삼각형 모양의 바느질 장식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고정되지 않아 가죽편 끝단이 뺏치는 형상이다.		
⑥	가방을 어깨에 매기 위한 어깨끈 끝단에는 자물쇠형상의 개고리가 있고, 가방 본체와는 어깨끈의 개고리와 가방 본체의 D자형 금속고리가 결합하고, 어깨끈의 자물쇠형상의 개고리 상단에는 보다 작은 크기의 D자형 금속고리가 추가되어 있고 추가된 D자형 금속고리에 가죽 어깨끈이 결합하고 있다.		
⑦	조임끈은 공통점 ①의 금속재질로 마무리된 구멍을 쉽게 통과하지 않도록 말단이 매듭으로 짧게 묶여 있다.		

2. 비교대상 상품의 차이점

차이점	내용	원고 제품	피고 제품
①	원고 제품은 가방 내부 중앙에 양 옆의 수직 두 변이 가방 내부에서 외부 본체와 박음질 되어 일체로 결합된 내부 수납공간이 존재하나, 피고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 제품의 조임끈은 두겹으로 가운데 박음질이 되어 있고 조임끈의 가장자리까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나, 피고 제품의 조임끈은 한겹으로 박음질이 없고 조임끈의 가장자리가 폭 부분 색보다 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③	원고 제품의 어깨끈은 폭 약 1.5cm 정도의 두 개 끈을 겹쳐 약 60cm에 이르는 길이로 제작하고, 어깨끈 양쪽 끝의 겹치는 부분 안쪽에 2개의 단추를 두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단추를 풀어 어깨끈 길이를 길게 조절할 수 있으나,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어깨끈의 길이가 비슷하나 그 폭이 3.5cm에 한 겹으로 길이 조절이 불가능하다.		

④	원고 제품은 가방 외부를 주지·저명한 원고의 상표로 채우면서 가방 내부, 조임끈, 어깨끈은 검은색, 빨간색, 분홍색 등 단색으로 대비를 주고 가방 외부는 코팅된 가죽 재질, 내부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피고 제품은 가방 내·외부를 포함하여 전체가 한 가지 색과 재질로 되어 있다.		
⑤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에 없는 내부 바닥에 처짐방지패드와 외부 바닥면 양 끝에 바닥원단 보호받침대가 있다.	-	
⑥	원고 제품은 상표가 표시된 가죽을 가방 본체에 사용하여 원고 제품임을 나타내고, 피고 제품은 가방 본체 측면의 D링 금속고리로고 장식을 걸어 피고 제품임을 나타낸다.		
⑦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에 없는 본체 측면의 D링 금속고리에 털방울 장식이 있다.	-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 실질적으로 동일함

내부 수납공간의 차이점은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형인데다가 조임끈 아래에 위치하여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 형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고, 가방의 소재와 색상은 생산자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와 피고도 같은 형상을 가진 가방을 여러 소재나 색상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해 왔는바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갖는 소재나 색상의 차이가 상품 전체의 형태를 달리한다고 볼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조임끈, 어깨끈, 바닥 처짐방지패드나 바닥원단 보호받침대, 로고 장식 내지 털방울 장식 추가 등은 그 변경의 정도가 미미하고 쉽거나 탈부착이 가능하여(로고 장식과 털방울 장식은 모두 탈부착이 가능하고, 피고는 원고 제품과 똑같은 어깨끈을 별도로 판매하였다) 상품 전체의 형태에 별다른 차이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차이점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개변으로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상품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
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
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
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
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제품과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방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그 스스로 위와 같은 선택과 결합으로 형성된 피고 제품 형태가 기존 선행
제품들과 다른 형태를 갖추었음을 전제로 제3자를 상대로 피고 제품의 상품 형태 보호
를 주장한 바 있고,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 방식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품의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 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원고가 구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판결요지 -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 서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 볼 것은 아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